

2023년 도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제3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3. 28.(화),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
- ▣ 안 건 : 총 4건
 - 심의 2건(양산 북정리 고분군 봉분보수 등)
 - 보고 2건(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기본계획(안) 등)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방식, 제8조 제척신청 등의 처리,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자문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양산 북정리 고분군(사적)」 봉분보수

2 「하남 이성산성(사적)」 서문지 복원

【보고사항】

3 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기본계획(안)

4 2023년 문화재수리 국고보조사업 현황(수리기술과 설계검토)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복원 2023-3차-001)

1. 양산 북정리 고분군 봉분보수

가. 제안사항

-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사적 『양산 북정리 고분군』 봉분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발굴조사 후 정비되지 않은 제7호분에 대한 봉분 보수와 중·소형 고분군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마련한 설계(안)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양산 북정리 고분군(사적)
 -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97번지 일원
 - 지정면적 : 25,994m²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양산 북정리 고분군 봉분보수공사
 - 사업지침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봉분정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7호분 봉분보수
 - * 직경 : 동서 29.2m, 남북 30.9m, 높이 8.7m~9.4m
 - 유구보존공사
 - * 발굴 매장주체부 묘역 : 35개 호분 재현
 - * 세라믹타일안내판 설치 : 옹관묘 2개소

- 시·발굴조사 및 정비 이력
 - 1920. 11. 일제강점기 부부총(10호분) 조사
 - 1990. 9. 동아대 북정 32기 조사(고총 4기 등)
 - 2000. 4. 10호, 10-1호, 11호 봉분정비
 - 2001. 5. 북정 고분군 봉분 정비공사
 - 2002. 8. 잡목제거 및 잔디식재 등
 - 2006. 2. 울타리 및 석축 정비
 - 2009. 12. 고분군내 탐방로 개설
 - 2010. 12. 고분군내 구거 정비
 - 2018. 12 북정리 9호분 발굴조사
 - 2019~2021. 북정리 1,2,7호분 발굴조사

라. 관계전문가 의견(설계자문)

< 2022. 8. 23. ○○대 ○○○ 교수, ○○대 ○○○ 교수 >

- 북정리 1,2호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형분들의 정비·복원과 관련한 구조 및 매장주체부의 복원은 기존의 설계안을 참고로 한다. 단, 지상부의 노출(재현) 복원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안내판을 활용하도록 한다.
- 7호분은 발굴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발굴조사 이후에 복원방안에 대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
- 토층별 흙의 공학적 분류시험(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비중시험 등) 실시
- 다짐시험 및 현장밀도시험을 통한 다짐도 제시

< 2022. 9. 14. ○○○(문화재위원)>

- 북정리 1,2호분 조사에서 확인된 고분의 구조가 대부분 횡구식 구조로서 입구가 존재하므로 평면 표현시 입구임을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함
- 입구부 표현은 벽체의 벽석과 색상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7호분의 복원정비는 위쪽 호석(3단) 동측의 6호분 사이의 지반의 강도와 견고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반 안정이 가능하다면 호석 노출과 함께 수집 토기의 표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함
- 7호분 봉분의 표면 기울기와 중심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2022. 12. 2. ○○○(문화재위원)>

- 양산 북정리 7호분은 동쪽의 6호분과 서쪽의 8호분 사이에 위치하며, 4방향 모두 경사가 심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 봉분 복원시, 원래의 봉분은 훼손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남·북·서쪽의 호석을 피복하고 있는 표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층단식(층따기)

공사를 할 경우, 고분 호석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봉분 바깥의 경사면을 대상으로 지형 변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사면을 유지한 상태로 성토를 하여 지형을 조성한 후 호석 내부면을 대상으로 봉분 조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봉분 바깥측부터 성토하면 7호분 호석의 훼손 없이 봉분을 조성할 수 있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7호분 봉분보수

- 발굴조사 완료 후 트렌치 등 발굴지는 서포트 및 모래주머니로 임시보강조치 후 복토 및 보양이 돼 있는 상태임
- 설계는 현 복토된 상태에서 봉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임시보강조치된 부분까지 공사범위를 확장하여 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유구에는 모래물다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봉분조성시 기존 봉토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호석은 미노출하고 봉분의 경사 및 최상단의 위치는 발굴조사시 작성된 토층도를 검토하여 최대한 발굴전 봉분 형태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발굴조사시 확인된 판축의 방법 및 형태 등을 적용한 판축 상세도 작성이 필요함
- 잔디 평떼 식재 상세도에서 1단의 높이(잔디+흙)가 5cm로 잔디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흙 두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구보존계획

- <발굴 매장주체부 재현>

-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가치가 높은 유구를 지상에 재현하는 것으로 지하 유구를 보존하면서 유구의 기본형태(평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됨
- 다만, 유구가 잘 남아 있고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춘 고분을 재현대상으로 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연스런 관람동선 계획이 필요함
- 매장유구 및 재현유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안내시설물 설치방안 강구가 필요함
- 계획과 같이 일부 소실된 석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되, 석곽 등에 사용되는 석재는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석재와 유사한 재질, 형태 및 크기를 반영하여 원 유구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발굴조사 이후 20~30cm 정도 복토가 이루어져 다져진 상태이므로 추가 성토는 제외하고 석실묘 및 석곽묘의 하부기초와 내부의 잔디마감 또한 제외하도록 함
- 재현방식에서 석실묘와 석곽묘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폐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석실묘에는 개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관계전문가 의견 : 폐쇄석을 벽체를 구성하는 석재와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 강구
- * 설계 : 폐쇄석을 벽체를 구성하는 자연석과 달리하여 화강석으로 표현
- 현재의 지형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 계획하는 만큼 단면도에 경사정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유구보존현황배치도에서 사업구역 내·외 구간의 등고선 기준이 다르므로 일치시켜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세라믹타일 안내판 설치>
- 현재 계획은 스텐레스 프레임 기둥이 지하유구(옹관묘)와 가까우므로 유구보존을 위해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2호 석곽묘와 33호 옹관묘가 상호 간섭이 되므로 재현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2.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가. 제안사항

-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공사 설계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2022년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 일대 발굴조사로 확인된 성곽 유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리기술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기도 하남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하남 이성산성(사적)
 - 소 재 지 : 경기 하남시 춘궁동 산36번지 외
 - 지 정 일 : 2000. 09. 16.
 - 관련 사업 경과
 - 2016년 13차 발굴조사(2016. 05. ~ 2016. 11.) 서문지 및 성벽 발굴
 - 2020년 14차 발굴조사(2020. 04. ~ 2020. 08.) 서문지 개구부 및 성 내측 조사, 서문지 초축 및 개보축 양상과 배수체계 변화, 사면부 석곽묘 발굴
 - 2022년 15차 발굴조사(2022. 6. ~ 2022. 09.) 서문지 좌우 성 내 능선부 조사, 배수로 연결 구조 양상, 내용벽 연장부 발굴
 - 2019년 종합정비계획
 - ※ (참고) 2006년 동문지 보수정비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하남 이성산성 동문지 복원
 - 사업지침
 - (2021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문지 복원정비 설계를 실시한다.
 - (2023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문지 복원 정비를 실시한다.
 - 성곽공사는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2016.8.8.)에 따라 시행한다.
 - 석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한다.
 - 보수의 전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출한다.
 - 관람 편의시설 설치시,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설계금액 : 약 10억원
- 사업내용 : 서문지 및 주변 성벽 정비
 - 서문지 바닥 및 측벽 정비
 - 성벽 및 등성시설 등 정비
 - 기존 배수로 정비 및 잔디배수로 설치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11. 16. ○○대학교 박물관 ○○○ 위원 >

-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의 원형과 양상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 밖의 2차성벽의 잔존부분과 등성시설을 정비하고 관람로를 성 밖에서 성 안쪽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배수관련 시설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성 내부의 지형을 고려하여 정비 후 존속성을 우선 고려)
 - 서문지 좌우측 부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예정되어있으므로 성 내부 정비설계에 대해서는 조사성과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동문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서문지의 복원은 일정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021. 11. 17. 문화재위원회 ○○○ 위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위원 >

- 보수 성벽선은 2차성벽 내측의 현저한 성벽유구선을 기준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2차 성벽과 성외의 성문 출입로 시설 유구는 그 형태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구를 노출 정비하되 기왕에 정비된 남벽 일대의 사례와 일관성을 갖도록 할 것
- 배수 유구는 기능을 살려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토 보존하고 주변의 유입우수를 적절하게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문지 주변의 최소한의 우수는 복원되는 문지를 통해 적절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 문지 외측의 노출정비유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복구문지를 이용한 탐방로 정비를 계획에 반영할 것
- 사용 석재는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적합한 석재를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에 명시할 것
- 보수 성벽선은 가급적 최소한의 높이로 설계하되 면석 외측선을 상면과 직각을 이루도록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

< 2022 3. 4.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대학교 박물관 ○○○ 위원 >

- 성벽 하부 성벽 기저부를 복토를 할 경우 성문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으므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성문 외측 출입시설부의 박석유구까지 노출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성내 배수로 현행 설계는 폭우 시 입수구가 막혀 우수가 성벽 상부로 넘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내에 효과적인 분산 배수 설계를 계획하여 최대한 배수로로 우수가 다량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함
- 배수로 낙수지점이 낙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급적 우수가 분산되어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2. 12. 21.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 ○○대학교 박물관 ○○○ 위원 >

- 서문지의 초축과 재축 유구를 기준으로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 정비하되 재축의 면적 높이를 발굴에서 조사된 적심의 높이까지 축조하고 1차 성벽이 나타나도록 한다.
- 성벽의 높이는 유구의 잔존 높이를 기준으로 정비하되 적심의 휴식각을 고려하고, 보축은 성벽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하며 성벽의 상부 마감은 적심의 노출과 박석의 형태를 정비한다.
- 정비의 범위는 15차 발굴에서 조사된 범위까지 정비하여 배수계획을 세우되 암거배수와 오버플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 상기와 같이 설계하되 공사 시 복토된 상부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변형 이완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 2023. 1. 12. ○○대학교 박물관 ○○○, ○○○ 위원 >

- 초축 및 개보축 축벽의 축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부 등성시설 면적의 복원 높이에 따라 2차 성벽의 높이가 연동될 필요가 있음
- 배수와 관련하여 문지 좌(서측)의 경우 문지 부분으로는 유구 노출이 필요하나 15차 조사구간은 복토 후 시설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있음(15차 조사구간은 추후 조사 필요한 부분) 우(동측)의 경우 맹암거를 막지 않게끔 시설 필요함
- 입수부 배후의 석축시설 및 사면부의 처리문제는 배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재청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문지 내부는 바닥부의 경우 유구의 잔존 상태를 고려하여 박석시설 등으로의 처리가 필요함

< 2023. 3. 3.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대학교 박물관 ○○○ 위원 >

- 초축 축벽과 개보축 축벽은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설계도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우회 탐방로의 경우 통일신라~고려시대 석곽묘 분포지역으로 시설이 어려움.

따라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문 내측의 석축시설 및 배수로 배후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가 필요함(우회 탐방로의 폭도 줄일 필요가 있음)

- 데크 전망대 역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구역 내에 시설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 탐방로 설계변경의 위치와 상호 고려하여 진행
- 정비·복원 서측 구간의 경우 추후 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으로 시설 등을 최소한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서문지 및 성벽의 정비방향 및 기준시점
 - 13~15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 및 주변 성벽 유구에 대한 본 정비계획은 기준시점을 한 축조시기로 특정하지 않고, 초축 및 1·2차 개보축 시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안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이성산성의 변천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시기를 함께 표현하는 방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서문지 바닥은 박석을 사용하여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발굴조사 결과 바닥마감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문식 문지 유사사례 비교를 참고하여 바닥마감 방법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신라 현문식 문지 사례조사 (7개 산성 내 12개소 문지 16가지) *14차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내용 정리

분 류	수구 有 - 부석 無	수구 無 - 부석 有	예외	미상
사 례	하남 이성산성 동문 충주 남산성 동문 청주 부모산성 북문 평택 자미산성 북문 2차 양주 대모산성 서문 포천 반월산성 동문 2차	문경 고모산성 남문 문경 고모산성 서문 보은 삼년산성 남문 충주 남산성 남문 초축 충주 남산성 남문 2차 양주 대모산성 동문	충주 남산성 북문 (수구無 부석無) 평택 자미산성 북문 (수구有 부석無) 포천 반월산성 동문 초축 (수구有 부석有)	충주 남산성 남문 3차 (바닥 미상 수구 無)
계	6	6	3	1

- 설계도면 오류 조정
 - 신재로 설치하는 면석의 형태 및 쌓기방법이 기존 유구의 형상과 상이하게 표현되어있으나 각 축조시기의 특징에 맞춰 수정하고,
 - 입면도 상에 변곡부 표시를 하여 계획에 대한 인지가 수월하도록 하고, 입면선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등 기타 오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 초축 측벽과 개보축 측벽의 평행 여부 등은 제토 후에 유구 현황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확인·조정하도록 하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3-3차-003)

3. 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기본계획(안)

가. 추진배경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조사·연구 체계, 실측 설계 및 기록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개선 필요
 - (조사·연구) 문화유산 수리를 위한 사전 조사·연구 시행(대상·범위·내용 구체화)과 수리공사와의 체계적인 연계체계 구축
 - (실측설계) 건축문화유산 수리특성에 따른 추정설계 최소화 및 해체 과정에서 확인 되는 정보(부재 결구, 부재 건전성 등)를 반영한 실측설계도서 작성
 - (기록화) 문화유산 수리기록(조사, 의사결정, 조치 등) 내실화를 위한 작성 기준 및 대가기준 마련
- 문화유산 보존조치 과정에 참여하는 조사·연구 단체와 실측설계업체, 수리업체의 이해관계 및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수리체계 개선(안) 마련 필요

나. 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안)

① 문화유산 수리 조사·연구 체계 개선

【문화유산 수리 전 사전 조사·연구】

□ 문화유산 수리 전 수리·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전 기본계획 수립대상) 중요 건조물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의 기본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미확보되어 있거나, 사전 조사·연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수리·복원 추진
- (기본계획 작성내용) 수리·복원 기본계획은 문화유산의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수리·복원 과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토록 계획 구체화

【문화유산 수리 중 조사·연구】

□ 문화유산 수리 중 조사·연구과제 목록화 및 사전 시행계획 마련

- (수리 중 조사·연구 목록화) 목조, 석조 등 문화유산 유형별 조사·연구 과제와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목록화 및 구체화하여 조사연구 누락 예방
- (수리 중 조사·연구 체계) 문화유산 수리과정에 필요한 조사·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수리과정이 되도록 계획

② 문화유산수리 기록화 체계 개선

- (기록화 기준 마련 및 작성주체 다변화) 「정밀실측 해체수리보고서」, 「수리 보고서」 세부 작성 기준 마련 및 작성주체 다변화를 통한 품질향상 도모

- 문화유산 수리유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작성기준 및 작성주체 구분
- (대가기준 마련)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공사비 효율 방식) 마련을 통해 품질확보

③ 문화유산 수리 실측설계 「책임설계제도」 도입

□ ‘책임설계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책임설계제도’는 실측설계업자가 문화유산 수리과정 및 준공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말함.
- (목적) 실측설계업자가 수리과정 및 준공과정에 참여하여 수리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측설계업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리품질 향상 및 수리과정 기록화 철저에 기여토록하기 위함

□ 문화유산 실측설계의 연속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측설계용역 체계 마련

- 육안으로 확인·작성이 가능한 기본설계도서로 설계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문화유산 수리과정에서 확인가능 한 부분은 실시설계도서로 작성·제출
 - 문화유산 수리과정에 실측설계업체가 참여토록 하여 실측설계와 수리공사가 공간적·시간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체계 구축

□ 책임설계(구분설계)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실측설계 대가기준 마련

- 실측설계기간의 장기화 및 수리대상 문화재 현황·실측조사 증가 등 실측설계업체의 설계비용 증가에 대한 적정 대가 반영

다. 수리체계 개선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4년)	1단계(기본계획) 2023년	2단계(시범사업) 2024~2025년	3단계(제도개선) 2026년
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용 기준 마련 · 시범사업 선정	⇨ · 시범사업 시행(10건) · 결과 분석	⇨ · 법령 등 제도개선 · 수리체계 확정

라. 향후 조치계획

- 수리체계 개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유관부서 의견수렴 : ‘23. 3 ~ 7월
-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 : ‘23. 3 ~ 4월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접수 8명

4. 2023년 문화재수리 국고보조사업 현황(수리기술과 설계검토)

가. 제안사항

- '23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설계검토 대상 사업(수리기술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 체계적인 설계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23년 국고보조사업 분류 및 설계검토 대상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23년 국고보조사업 분류 대상

(단위 : 건)

구분		전체 국고보조사업	분류대상			분류 제외
			합계	수리사업	기타사업 (용역,매입,등록·동산)	천기과, 추진단(백제)
총액	일반	1,902	1,399	845	554	503
	역사유적 보존관리	88	35	20	15	53
세계유산		71	55	46	9	16
합계		2,061	1,489	911	578	572

<국고보조사업 분류 기준>

구분	지정문화재 수리	지정문화재 외 수리
수리기술과	○ 중요문화재 해체·보수 등 소관과 검토 사업 외 수리 전체 ※ 긴급보수사업 포함	○ 중요 건축물(극락전, 고방, 보호각 등) 보수 복원 ○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정비 (배수로, 탐방로, 기단, 석축, 수목정비 등) ○ 전통단청 시범사업
소관과* 및 지방	○ 문화재 경상 관리 및 경미한 수리 (수리법 시행령 별표1) ○ 현대시설물 및 관람·편의시설 보수·건립 (건물철거·정비, 화장실, 안내소, 주차장, 울타리, 안내판, 경관조명 등)	○ 수리기술과 검토사업 외 전체

* 소관과 : 유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근대문화재과 등

○ '23년 국고보조사업 분류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국고보조사업	국가검토		지방검토	별도분류 (천기과, 백제추진단)
			수리과 검토 (기술지도)	소관과 검토 (천기과, 백제추진단 제외)		
총액	일반	1,902	309 (104)	314	775	503
	역사유적 보존관리	88	1 (0)	23	11	53
세계		71	21 (6)	17	17	16
합계		2,061	331 (110)	354	803	572

※()은 기술지도사업 건수이며, 설계 검토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향후계획

- 체계적인 설계 검토 및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접수 8명